



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월례회의

2024년 10월 25일 17시
바야다 재가센터 4층 회의실

1. 바야다 웨이브 시상식(3분기)_신뢰상
2. 논의사항 및 공지사항
3.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



*본 자료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, 무단 복제·배포·방송 또는 전송을 금합니다.

논의사항, 공지사항

- ◆ 수급자 택 보관파일 관리 : 비상연락망 내용 숙지 및 최신자료 유지
- ◆ 종료태그 시 특이사항 입력 (주 1회)
- ◆ 일정변경시 수급자(보호자) 상의 후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기
- ◆ 환수대상: 수급자 병원 입원기간 근무,요양보호사 병원진료시간 태그
해외 출,입국 날 (수급자/요양보호사)
- ◆ 급여제공기록지 작성(필수사항)
 - 태그 안 찍었을 때
 - 시작태그만 찍었을 때(병원동행 시 사회복지사에게 알리기)
 - 주말, 공휴일, 연장근무했을 때(1~2등급: 300분이상 3~5등급: 210분 이상)
- ◆ 태그 특이사항 필수 입력 사항
 - 주 1회 상태변화 입력 (5주 인 경우 주1회 씩 5번 입력)
 - 수급자 안전관리 지침 내용을 반드시 입력
 - 주말, 공휴일, 연장 근무 시 사유: 예)보호자가 요청한 사유를 입력



논의사항, 공지사항

◆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

- 대상시설 :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(재가장기요양기관) 129개소
- 대 상 자 : **만 64세 이하**(1960.1.1.이후 출생자) 대상시설 소속 **장기요양요원***
* 돌봄종사자로서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, 조리원
- 지원내용 : 4가백신 접종 실비 전액 지원(4가백신비+접종시행비)
- 접종기간 : 2024. 9. 2. ~ 2024. 11. 16. (2024. 11. 16. 이후 접종 시 지원 불가)
- 비용청구(기관→구) : '24. 11. 18. **限** (반드시 기한 내 청구)
- 제출서류 ※ 기관별 담당자 확인 **必**(붙임1.지원계획, p.3 참고)

장기요양요원 ↓ 기관	1. [서식1]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신청서 ※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필수 2. 진료비 상세명세서 (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) (주의) 진료비계산서는 금액만 있어서 별도의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되니, 상세명세서로 제출 3. 본인계좌번호
기관 ↓ 구 (어르신복지과)	1. [서식2]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보조금 신청서 2. [서식3] 접종비 지원 대상자 명단: (서식3-1)한글파일 직인날인본 및 (서식3-2)엑셀양식 모두 제출 必 3. 기관 명의 보조금 통장 사본(기존 독감접종 0원 통장, 필요시 신설) 4. 4대보험 가입명부(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,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발급 가능) ※ 그 외 증빙자료는 기관 보관(매입 시 자처구 이관)

3



논의사항, 공지사항

◆ 수급자 안전관리 지침

- 환절기 감기조심, 외출시 체온유지(모자 착용), 혈압약 챙기기

◆ 2024년 마무리 점검

1. 건강검진 마치고 결과 제출
2. 필수교육 모두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
 - 노인인권 교육 ○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○개인정보보호교육
 -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○긴급지원신고 의무교육 ○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 - 퇴직연금교육

4



논의사항, 공지사항

◆ 영양보호사 만족도조사 협조 요청

- 15일 급여지급 후 만족도조사 링크 단톡 방 공지

★ 9월 만족도 조사 문의 내용

- 수급자의 무리한 안마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합니까?
: 정해진 규정외의 과도한 신체활동 지원은 안해도됨.
안마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필요시 개인이 허용가능한 범위만 지원.

◆ 2024년 10월 25일 영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

월례회의 참석은 영양보호사 업무 중 필수사항입니다.

또한 회의참석, 교육이수 등은 바야다우수직원 선정 시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.



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

2021년 5월 영양보호사 교육자료

[교육 목표]

1. 성폭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2. 성폭력의 유형과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당 행위 발생을 예방한다.
3. 성폭력 대응방법을 숙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.



성폭력의 개념

- 성(性)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·언어적·심리적 폭력으로,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, 성기노출,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
-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,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

성희롱

-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(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의 정의 [제2조 3항])



성폭력의 유형

1. 육체적 성희롱

-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
- 가슴,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-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

2. 언어적 성희롱

- 음란한 농담,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
-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-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



성폭력의 유형(계속)

3. 시각적 성희롱

-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줌
-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
-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
4. 기타 유형

-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



돌봄서비스 현장 내 성희롱

-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, 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. 요양보호사는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희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.

*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

-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, 몸을 쓰다듬는 경우
-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
- 어르신의 얼굴,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
-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 달라고 요구하거나,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
-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



성폭력의 대응방안

-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,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
-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
-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
-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,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하기
-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기
-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하기
-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지 않기

6



성폭력 대응방법

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하려 할 때에 일단 **강하게 거부**

대상자의 가족과 시설장에게 **사실을 알리겠다** 고 대상자에게 말하기

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, **서비스를 중단** 하겠다고 경고

시설 차원에서 대상자의 **가족과 면담** 을 통하여 사실 알리기



성폭력 대응방법 : 돌봄서비스 내에서 대처방안

-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,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
-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 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.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하기
-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
-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하지 않기
-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(여성긴급상담전화 ☎1366, 성폭력피해신고 ☎1899-3075)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기

7



이번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
바야다웨이를 기억하며
다음달도 함께 나갑시다.
“공감, 탁월, 신뢰”

감사합니다.

